

## 화순군 경관조례안 심사보고

### 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6. 8 화순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6. 8. 16

다. 상정일자 : 2006. 8. 30

(제1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·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)

### 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도시경제과장 양정열

나. 제안사유

- 화순군의 체계적인 경관관리 및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·형성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매력 있는 아름다운 화순건설과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

다. 주요내용

- 군수는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고 시책을 수립하거나 이에 대한 시행을 추진 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고,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(안 제4조)

- 군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한 각종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국가 또는 군의 경관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, 개발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경관계획에 따라 가능한 한 도시경관이 훼손되지 않고, 바람직한 도시경관의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당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(안 제5조)

- 군수는 도시경관계획의 수립과 개성 있는 도시경관 형성 등 관련정책의 추진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11인 이내의 화순군 도시경관위원회를 두되,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·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화순군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.

(안 제7조)

- 쌈지공원 설치 및 야간경관조명 설치 대상 및 권장 대상을 규정함

(안 제15조, 제16조, 제17조)

- 군수는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보수할 때에는 계획적인 관리를 통하여 그 형태·디자인·색채가 주위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경관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하며, 경관관리계획에 부합하도록 설계 또는 시공을 하여야 한다.(안 제18조)
- 군수는 폭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토지의 형질변경, 물건의 적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재질 및 색채 등이 주위 환경과의 조화 또는 도시미관을 고려한 공사용 가림판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.  
(안 제19조)
- 군수는 아름다운 마을 또는 단지 가꾸기 운동을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전개하는 모범적인 동 또는 마을·단지를 선정하여 경관시범 동 또는 마을·단지로 지정할 수 있으며, 경관시범 동 또는 마을·단지에 대한 선정방법 및 이에 따른 지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.(안 제20조)
- 군수는 도시경관형성에 대한 군민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한 시설물이나 경관형성사업 등을 선정하여 당해 시설물 또는 사업의 설계자·시공자·소유자에게 도시경관상을 시상할 수 있으며 수상대상자의 선정방법·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 
(안 제24조)
- 관계법령 : 전라남도 경관조례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봉훈)

- 본 제정조례안은 화순군의 경관을 종합적·체계적인 경관관리 및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·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며,
- 전라남도의 표준안을 근간으로 입안된 조례로서 조례규칙심의회 등 제반 절차가 선행되었고, 또한 상위법령에도 위배되지 않았음이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답변요지

“생 략”

5. 토론요지

<토론자 : 임지락 의원>

제7조제2항 “화순군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”를 “화순군 도시계획위원회에 경관분과위원회를 두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”로 수정코자 함.

6. 심사결과

“수정가결”

7. 불 임 : 화순군 경관조례안

## 화순군 경관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6. 8. 30

제 안 자 : 임지락 의원

### 1. 수정이유

- 화순군 경관도시위원회를 새로 두어 위원회 설치를 남발하는 것보다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경관분과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됨.

### 2. 수정 주요골자

- 제7조제2항 “화순군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”를 “화순군 도시계획위원회에 경관분과위원회를 두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## 화순군 경관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화순군 경관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제2항 “화순군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”를  
“화순군 도시계획위원회에 경관분과위원회를 두어 그 역할을 대신 할  
수 있다”로 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 표

조 례 안	수 정 안
<p>제7조(도시경관위원회의 설치)①(생략)         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·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<u>화순군 도시계획위원회에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7조(도시경관위원회의 설치)①(생략)          ②-----          ----- <u>화순군 도시계획위원회에 경관분과위원회를 두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.</u></p>